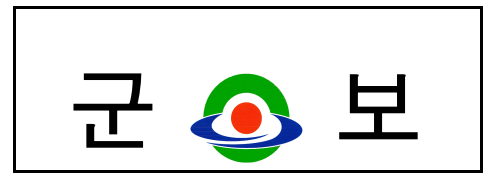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09호 2019. 12. 12.(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예천군 조례 제2385호)
-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386호)
-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387호)
- 예천군 문화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388호)
- 예천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예천군 조례 제2389호)
-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390호)
- 예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391호)
- 예천군 경관 조례(예천군 조례 제2392호)
-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393호)

예 규

- 예천군 생활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수집보상금 지급 지침 일부 개정지침(예천군 예규 제20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85호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증가 시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입자”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천군으로 주소지를 이동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천군으로 주소지를 이동하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예천사랑상품권”이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및 대상)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입자 및 전입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천사랑상품권: 전입자 1인당 1만원
2. 태극기: 전입세대당 1세트
3. 쓰레기 규격 봉투: 전입세대당 200리터(20리터 10매)

제4조(지원기준)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은 전입 후 최초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은 전입자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③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 다른 시·군·구 전출 후 1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신청 및 절차 등) ① 제3조 각호에 따른 지원 신청은 전입자 또는 전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입자가 읍·면에서 직접 전입신고 하는 경우 읍·면장은 전입신고 시 지원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전입자가 아닌 자가 전입신고를 하거나 전입자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전입자에게 지원 내용을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입자 또는 전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지원 신청을 하고 지원금(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신청인에게 지원금(품)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인구증가 시책 지원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달 5일까지 지급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 등의 비치)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및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관리 대장

제7조(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관리 대장

년

○○읍 · 면

연번	신청일	신청인(위임받은 사람)				지원 대상자(위임한 사람)			지원 내용	담당자 확인
		성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제정이유

인구증가 시책 추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입 지원 대상자 정의 (제2조)

- 다른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천군으로 주소지를 이동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및 세대

나. 전입 지원 내용 (제3조)

- 예천사랑상품권: 전입자 1인당 1만원
- 태극기: 전입세대당 1세트
- 쓰레기 규격 봉투: 전입세대당 200리터(20리터 10매)

다. 전입 지원 기준 (제4조)

- 전입 후 최초 1회만 지원 가능
- 지원 후 다른 시·군·구 전출 후 1년 이내 다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

라. 전입 지원 신청 및 절차 (제5조)

- 읍·면장은 전입신고 시 지원금(품) 지급 및 관리 대장 기록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86호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을 통해 주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
되지 않아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주민”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사용자가 공공시설의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개방공간의 범위)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방공간에 대하여 행정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 시간 등 공공시설의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며, 정부24에 공지한다.

제5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사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기간)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방공간별 특징과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허가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행사계획서, 부대시설물 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신청 변경 및 취소)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그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사용)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허가는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신청
2.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 경합 시 단체 우선

제10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과거 개방공간 및 장비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고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6. 기타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하여 군이 개방공간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개방공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별표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방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군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다.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신청취소서를 제출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70% 반환 :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사용신청취소서를 제출한 후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50% 반환 :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신청취소서를 제출한 후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1조제1호에 따른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와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자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

구 분	사 용 료		비 고
	기준단위	금 액	
회 의 실 강 당	1시간	5,000원	냉난방을 사용 할 경우 30% 가산

○ 초과 사용료 가산

- 초과 시간이 30분 미만일 경우 기준사용료 50%
- 초과 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기준사용료 100%

○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기준시간으로 봄

【별지 제1호서식】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자	개인 ()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단체 ()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F A X			
		주소						
사용시설		시설명	사용공간	사용시간	냉·난방 사용여부		비고	
					냉방	난방		
사용일시		년 월 일(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요일) 시 분까지						
사용목적								
사용인원								
기타참고사항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붙임 : 1. 행사계획서 2. 기타 관련서류(부대시설물 설치 내역, 원상복구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변경)허가서

신청자	개 인 ()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단 체 ()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F A X	
		주 소			
사 용 시 설		시설명	사용공간	사용시간	냉난방 사용
					냉방 난방
사 용 일 시		년 월 일(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요일)	시 분까지		
사 용 목 적					
사 용 료		일금 원(₩)			
허 가 조 건		1.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시설 개방 공간의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공공시설의 사용(변경·취소)신청서

신 청 자	개 인 ()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단 체 ()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F A X		
		주 소					
변 경 (취 소) 사 유				인 변	원 경	당 초	명
						변 경	명
사 용 시 설		당초	시 설 명	사 용 공 간	사 용 시 간	냉난방 사용여부	
						냉 방	난 방
		변경	시 설 명	사 용 공 간	사 용 시 간	냉난방 사용여부	
						냉 방	난 방
사 용 일 시		당초	년 월 일 : ~ 월 일 : (시 간)				
		변경	년 월 일 : ~ 월 일 : (시 간)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 내용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제정이유

행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주민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방공간의 범위 (제4조)

- 행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민 사용
-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은 군수가 정하며 정부24에 공지

나. 사용자격 (제5조)

- 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
- 군에 주소지를 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사용기간 (제6조)

-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함

라. 사용신청 및 허가 (제7조)

- 사용신청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 사용변경신청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 사용허가 : 사용신청일부터 3일이내

마.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2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87호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전통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노점(露店)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점포”란 전통시장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축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상인의 영업에 필요한 일정 면적의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으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하거나 군수에게 개설 신고를 한 시장을 말한다.

4. “시설물”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및 영 제8조의2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영 제9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현대화사업 대상으로 정부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팎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상

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전통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구역으로 한다.

② 군수는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 신청을 받아 전통시장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시장의 관리

제4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②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전통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7조(임시시장의 개설 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8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관리

제9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전통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전통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상인회의 설립 및 운영

제13조(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군수가 지정하는 노점 허용구역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상인회의 등록) ① 제1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 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② 군수는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상인회의 정관)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에서 정하며, 정관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인회의 회원인 상인이 영 제9조의3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및 자료제출)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법 제20조,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년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5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20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2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설물과 편의시설(이하 이 장에서 “시설물 등”이라 한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관리자는 시설물 등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할 것을 허락할 수 있다.

1. 시설물 등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 등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장관리자가 직접 시설물 등을 철거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 등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설물 등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을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23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주차장 : 전통시장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예천군 주차장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법」 및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전통시장에는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때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소유자의 동의 를 받아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전통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도로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전통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허용하며 폭은 4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충분한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시설물의 설치비용이 전액 보조금인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23조제1항 및 「상권 활성화사업 운영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그 시설물을 소유·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소유권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민간자부담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시설물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 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물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 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며 시설물 관리 및 변동사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상인조직 등이 갖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물을 폐기하거나 매각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주차장 조례」,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군수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료 및 경비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예천군 주차장 조례」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횟수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조건은 군수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갱신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건은 군수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2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 및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설치하려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총칙 (제1조 ~ 제3조)

- 조례 규정 목적 및 전통시장 구역 지정

나. 시장의 관리 (제4조 ~ 제8조)

-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의 절차 규정
- 임시시장의 개설 기준, 관리, 개설 취소 사항 규정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시 필요사항 규정

다.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9조 ~ 제12조)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요건과 범위, 지정 및 변경 시 절차 규정
- 상권활성화구역은 전통시장에 준하여 관리

라. 상인회의 설립 및 운영 (제13조 ~ 제19조)

- 상인회 설립 및 상인회 회원 규정, 상인회 등록 및 등록취소 시 절차 규정
- 상인회 운영과 관련한 정관 규정 및 정관 변경 절차 규정
- 상인회 및 상인회 회원에 대한 예산지원과 지원에 따른 정산

마.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0조 ~ 제21조)

- 시장관리자를 지정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 지원 규정
-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의 절차 규정

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2조 ~ 제30조)

- 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를 위해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 가능
- 시장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 조치 실시
- 편의시설(주차장, 비가리개, 화장실, 전통시장안의 도로, 진입도로) 설치 기준
- 시설물의 소유권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는 군수가, 민간자부담이 있는 경우는 상인조직이 가질 수 있으나, 시설물을 폐기하거나 매각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이 필요
- 위탁관리 시 절차,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 및 경비 징수, 계약 갱신기간 및 횟수 규정
- 군수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 가능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88호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

지원분야	세부사업 내용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전통민속문화 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품물경연대회 출연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달집태우기 행사, 연날리기대회 등 전통민속놀이에 관한 사항
	국악(판소리) 대제전 및 경창대회 등에 관한 사항
	향교 및 서원 행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예천군 정체성 연구사업	윤리선양 실천사업 및 향토사랑사업에 관한 사항
	내고장 뿌리찾기사업에 관한 사항
음악·미술·문학 등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	백일장, 시낭송대회, 문학지, 한시집, 화보집 등 출간에 관한 사항
	그림대회, 서예대회, 전시회 등 미술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노래자랑, 음악회, 합창단, 오페라, 뮤지컬, 연극(창극) 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촌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미술관(갤러리) 전시회 및 사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사진 공모전, 촬영대회 및 전시에 관한 사항
	무용 발표회, 경연대회 등에 관한 사항
예술제 및 축제 지원에 관한 사업	아리랑제 등 각종 지역 예술제 개최에 관한 사항
	다례축제, 문화축제 등 지역 문화관광 축제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국내외 관광 판촉행사 등 관광홍보마케팅 사업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 및 관광객 유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국내 외 선진지 비교연수 등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박람회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관광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시티투어 운영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행사 국내외 교류 사업	문화·예술·관광 관련 각종 교육·회의·자문 등 참석자 지원에 관한 사항
	서예, 국악 등 전통문화 관련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문화·예술 관련 강좌 등에 관한 사항
	종교시설 활용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문화·관광 진흥 육성사업	문화정보센터 문화정보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종교시설 환경정비 및 종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성탄트리 점 등식, 석가탄신일 봉축행사 등)
	각종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문화 공연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이유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대표 관광지를 연결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제공하기 위함

◇주요내용

- 시티투어 운영 항목 추가 (별표)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89호

예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예천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능률성과 효과성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평가하여 대행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평가의 원칙)**
-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③ 평가 항목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 대상이 되며 평가 대상이 수행하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인력관리, 장비관리 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대행계약 체결 시 평가 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지침 작성 시에는 정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군수는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의한 평가 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평가를 별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③ 제2항의 평가는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용역 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단은 대행업체당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지역주민은 평가 대상인 대행업체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군수는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별표에 따른 평가기준에 미달되어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때에는 평가대상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대행업체의 대표는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우수 대행업체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 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우수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지침을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예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
(제8조제2항 관련)

1. 평가 방법 및 배점

가. 평가 방법(3단계) :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나. 배점(총점 100점)

총점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비고
100	40	30	30	가점 3점

다. 평가 항목

(1) 현장평가

- 평가내용 : 바른 수거, 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 인력관리, 장비관리, 시설관리
- 평가방향 : 현장성과 정량성을 위해 수거 후의 주택 지역 및 상가 지역의 청결상태, 수집운반차량 등의 청결성과 내실 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

(2) 서류평가

- 평가내용 :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시책사업의 참여정도
- 평가방향 :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시책 사업의 참여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

(3) 주민만족도평가

- 평가내용 : 바른수거, 생활환경 보전, 대주민 자세, 종합만족도
- 평가방향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

2.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등 급	평 가 점 수	적 용
탁 월	90점 이상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우 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표창 등
보 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입찰참여기회 부여
미 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관리감독 강화 등
부진(미달)	60점 미만	영업정지, 대행계약해지, 입찰참여제한 등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예천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평가의 원칙 (제4조)

-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함

나. 평가대상 및 업무 (제5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되며, 평가대상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인력 관리, 장비관리 등을 대상으로 함

다. 평가절차 (제6조 ~ 제10조)

-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을 마련하고 연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대행업체 평가는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용역 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현장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평가결과의 활용 (제11조 ~ 제14조)

- 평가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가 가능하도록 함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도록 함
마. 우수대행업체에 대한 포상 등 (제15조)

○ 우수 대행업체의 장에게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90호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군 또는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청사”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이용시간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공공청사에 설치된 주차장의 일반 이용객 제공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운영·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및 운영·관리에 대한 근거 신설 (제17조의4)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
 - 주차요금, 이용시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함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91호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5천제곱미터”를 “3천제곱미터”로 하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5. 집합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일반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7.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제1항 본문 중 “5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
2.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
3.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가. 가축시설

나. 도축장

다. 도계장

라.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8조제2항제1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예치하여야”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로 제출할 경우 보증기간은 공사기간(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완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에 12개월 이상을 가산한 기간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예치금의 예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금을 예치한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대행은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하고, 설계자가 건축사가 아닌 경우와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대행자 지정에 필요한 인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하고, 응모자가 소수일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예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라 구성된 업무대행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업무대행자 지정요청이 있을 경우 제2호에 따라 작성·비치된 명부에서 추첨을 통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업무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예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업무대행자가 사고,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지체없이 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재추첨을 하여 업무대행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제6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2. 4분기의 경우 분기 말 기준 10일 전까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잔여일수에 따른 미지급 대행수수료는 다음연도 1분기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지정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통보 당일 및 공휴일 미산입)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도서 미비 등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5천제곱미터 미만 : 5일 이내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7일 이내

⑧ 군수는 업무대행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건축사의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⑨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대한건축사협회 예천지역건축사회는 내부 규정 제·개정 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검사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는 군 홈페이지에 수수료 금액을 연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공지에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군수가 제4항에 따른 공개공지의 활용 신고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공개공지 활용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개공지 등에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하는 자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5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과·징수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총 부과 횟수는 3회로 한다”를 “부과·징수한다”로 한다.

제2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법공사 진행 중에 공사 중지 등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원상복구 등 조치 없이 위반을 한 경우
2. 위반사항을 시정(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 된 경우 포함한다)한 후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 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3.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4.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5. 군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6. 주택·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7.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8.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9.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10.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11.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1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군수는 제2항제8호에 따라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별표 5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제29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70퍼센트의 금액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수에 따른 용자 및 보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3.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비
4.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비
5. 법 제81조의2에 따른 빈집 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비
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7.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8.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등
9. 그 밖의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④ 제3항제1호 및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용자 및 보조는 제1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 등 법령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군수가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안의 공지기준 적용례) 제23조에 따른 별표 2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2】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3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다량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5미터 이상

대 상 건 축 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
마. 공동주택	• 아 파 트 : 4.5미터 이상 • 연 립 주 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 1미터 이상
사.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도축장·도계장, 자원순환 관 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 3미터 이상
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 12516호, 2014.3.24.,일부개정] 부칙 제9 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천제곱미터 미만 2)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3)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3천제곱미터 이상	• 1미터 이상 • 2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2미터 이상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u>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u>)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5미터 이상

대 상 건 축 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도축장·도계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 3미터 이상
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16호, 2014.3.24., 일부개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2)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3)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 1미터 이상 • 2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아. 그밖에 <u>가목 내지 바목</u> 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u>0.5미터 이상(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u>

【별표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제13조제5항 관련)

검사대행 건축물 및 연면적	사용승인 검사대행 소요시간
660제곱미터 미만	4시간
66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5시간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	6시간
2,000제곱미터 이상 4,000제곱미터 미만	7시간
4,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	8시간
6,000제곱미터 이상 8,000제곱미터 미만	10시간
8,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13시간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16시간
30,000제곱미터 이상 50,000제곱미터 미만	19시간
50,000제곱미터 이상 70,000제곱미터 미만	23시간
70,000제곱미터 이상 100,000제곱미터 미만	27시간
100,000제곱미터 이상 200,000제곱미터 미만	30시간
200,000제곱미터 이상 300,000제곱미터 미만	34시간
300,000제곱미터 이상	38시간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해당 연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 시간당 노임단가(1일 8시간)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수수료 지급기준

가.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 산출 금액의 20퍼센트

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 산출금액의 80 퍼센트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수수료 산정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적용)

○ 대행 수수료 = [직접인건비(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시간당 기술사 노임 단가 × 소요시간) + 직접경비(직접인건비×10%) + 제경비(직접인건비×110%)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 × 20%}] × 현장조사비율

※ 2018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건설-기술사) : 367,654원

【별표 4】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기준(제18조제7항 관련)

1. 표기 내용

- 가. 안내문: 군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이 곳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쉼터)입니다.”등)
- 나. 배치도: 컬러 평면도에 공개공지 등 위치 및 영역 표시
- 다. 범례: 위치, 면적, 휴게시설(녹지, 의자, 파고라, 수경시설 등), 주의사항 등 표시
- 라. 그 밖에 공개공지 등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

2. 설치 규격 및 재질

- 가. 규격: 0.5m² 이상
- 나. 재질: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으로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별표 5】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등급기준(제28조제4항 관련)

등 급	기 준
우 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 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 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 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 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 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

【별지 제1호서식】

적용의 완화 요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공사감리자
허가번호		허가일자	
건 축 주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 계 자 (공사감리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 공 자	성명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완화 받고자 하는 규정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			
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주변 의 대지 및 건축물·도시미관 이나 주변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예천군 건축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관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건 축 주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번호		허 가 일	
대지위치		지 번	
착공예정일	. . .		
사용승인 예정일	. . .		
예치방법	[] 현금 등 [] 보증서		
건축공사비	일금	원정 (₩)	
예치금액	일금	원정 (₩)	

「예천군 건축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건축공사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표준건축비로 산정된 공사비 내역)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관증

예치방법	☐ 현금 등 ☐ 보증서	
예치금액	일금 원정 (₩)	
예치자	성명	주소

「예천군 건축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위와 같이 보관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수 직인

건축주 () 귀하

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반환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건 축 주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번호		허 가 일	
대지위치		지 번	
사용승인일	. . .		
예치방법	[] 현금 등 [] 보증서		
건축공사비	일금	원정 (₩)	
예치금액	일금	원정 (₩)	

「예천군 건축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관증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등록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구분	[] 신규	[] 재신청	[] 중도사퇴 후 재신청	[] 제외
신청인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소주소			

「예천군 건축 조례」 제13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요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건축구분	[] 신축 [] 이전		[] 증축 [] 대수선		[] 개축 [] 용도변경 [] 가설건축물
건축주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번호			허가일자		
설계자	사무소명		감리자	사무소명	
	성명			성명	
건축물 현 황	대지위치			지번	
	용도			연면적	

「예천군 건축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배정서

업무대행자	사무소명	
	성명	
제출기한		

「예천군 건축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를 상기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청구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업무대행 건축사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명(명칭)	면허번호	
	주소	등록번호	
	대행기간	전화번호	
업무대행 내용	청구금액	일금 원정 (₩)	
	계좌번호	금융기관	
	대행건수	허가(신고) : 건, 사용승인 : 건	

「예천군 건축 조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 2.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건축물 현황	대지위치		구조
	대지면적(㎡)		용도
	건축면적(㎡)		층수
	연면적(㎡)		공개공지(㎡)
	사용승인일		사용면적(㎡)
신고내용	목적		
	활용기간	일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연간사용 기간누계	일 (종전사용일수 일, 금회사용일수 일)	
	※ 공개공지 사용 가능 일수는 연간 총 60일 이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예천군 건축 조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1.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소유자의 동의서*)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집합건축물인 경우, 관리단의 의결을 받은 동의서
	2. 공개공지 사용현황 및 시설물 설치계획 등이 표시된 배치도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개공지 활용 신고 증명서

신고번호	년 공개공지 활용신고 제 호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건축물 현 황	대지위치		구조	
	대지면적(㎡)		용도	
	건축면적(㎡)		층수	
	연면적(㎡)		공개공지(㎡)	
	사용승인일		사용면적(㎡)	
신고내용	목적			
	활용기간	일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연간사용 기간누계	일 (종전사용일수 일, 금회사용일수 일)		
	※ 공개공지 사용 가능 일수는 연간 총 60일 이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에 대하여 「예천군 건축 조례」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 활용 신고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직인

유의사항	1.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공지를 사용 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상기내용 및 신청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공개공지 활용 신고대장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개공지 활용 관리대장

1. 공개공지 등 현황

(4쪽 중 제1쪽)

위 치								
건 물 명				사용승인일				
건 축 물 기본정보	대지면적		㎡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층 수	지상	층		주 용 도			
		지하	층					
	건 축 기 준 완 화 내 용	용적률 완화						
		높이 완화						
		기 타						
	건 축 주				연 락 처			
	설 계 자				연 락 처			
	시 공 자				연 락 처			
공개공지 기본정보	면 적		㎡		유 형			
	조 성 시 설	휴 게 시 설	벤 치	☐ 설치(개) ☐ 미설치		테이블	☐ 설치(개) ☐ 미설치	
			파고라	☐ 설치(개) ☐ 미설치		운동기구	☐ 설치(개) ☐ 미설치	
		기 타 시 설	조 명	☐ 설치(개) ☐ 미설치		기타시설	☐ 설치((개))	
	안내 표지판		설치방법	☐ 부착형(건물벽, 바닥, 시설물에 부착) ☐ 스탠드형(독립된 표지판)				
감 리 자		(인)(사무소명 :)						
공 개 공 지 배 치 도								

공개공지 사진

- 1) 공개공지 사진은 전체 조성현황 및 이용실태가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최소 2개 지점 이상 촬영하도록 하고, 위반내용 등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을 Close-up하여 촬영하도록 한다.

공개공지 시설사진	
안내표지판(필수)	벤 치
테 이 블	파 고 라
수경시설	조 명
운동기구	기타시설

2) 공개공지 시설사진 중 안내표지판은 의무사항이며, 이외 조성시설물 사진은 조성내역에 따라 촬영하도록 한다.

◇개정이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 확대 (제3조)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 5천제곱미터 → 3천제곱미터
- 집합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
- 일반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

나.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예치대상 및 보증기간 확대 (제8조)

- 예치대상 : 5천제곱미터 → 1천제곱미터
- 보증기간 : 예정공사기간에 12개월을 추가 적용
- 산출기준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

다. 건축허가 수수료 반환불가 규정을 삭제 (제10조)

- 건축허가 수수료에 대한 반환불가 규정을 삭제함

라.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의 대행 (제13조)

-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산출방식의 조정을 통해 수수료를 현실화

마.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고 활용 방안을 확대 (제18조)

바. 혐오시설(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강화 (제23조)

-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에 대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 규정을 신설(1~3미터)

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축소 및 부과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 (제27조)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을 축소(85제곱미터→60제곱미터)

○ 총 부과횟수 3회 규정을 삭제(3회 → 이행 시까지)

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 (제28조)

○ 민간건축물 및 지진·화재·공사장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자. 건축안전특별회계 관련규정 신설 (제29조)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경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92호

예천군 경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천군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경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군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 및 승인을 얻어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경관 향상을 위하여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형태·재료·색채 등의 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야간경관”이란 경관요소에 자연 빛과 인공조명이 비추어져 형성되는 야간 시간대의 경관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군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군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지역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경관사업 추진 시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물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출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주요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

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경관사업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구조물·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 사업
2. 건축물의 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
3.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
4. 특정한 공간과 거리 특화 시범사업

5. 주요 하천변 및 수변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군 경관 기록화 사업
7. 교육·홍보 등 경관디자인 육성 및 인식 개선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방안
5.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비 및 조달 방안의 적정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의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천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주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전문가
4. 경관사업자
5. 경관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
6. 예천군의회 의원
7. 그 밖에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 제13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④ 협의체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경관협정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다만, 지상권자 및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20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제21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공공부문에 대한 경관계획수립·시행 내용 포함)
3.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4. 사업비 산출근거
5. 사업비 조달 계획

6. 지원 또는 용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7. 유지관리 계획
8. 사업계획 관련도서

제5장 경 관위 원회

제22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예천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심의대상 사회기반시설사업)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보상비 제외) 교량·도로·육교 등 토목공사
(철도, 고속도로 제외)
2.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보상비 제외) 공원 및 조경공사
3.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대상에 설치되는 경관 조명 시설로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 가.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및 도시구조물(교량, 지하차도, 육교 등)
 - 나. 국가, 도 및 군의 지정문화재
 - 다. 도시공원, 광장, 수변공간, 사적지 주변
 - 라. 랜드마크의 성격을 가진 상징 조형물

제24조(심의대상 건축물)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및 지상3층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 또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축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기준 등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3. 위법건축물을 양성화 하는 경우
4.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제25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대상 중 건축주가 자문을 신청한 사항
4. 「예천군 건축 조례」에 의해 설치된 예천군 건축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5. 군에 표준적으로 적용되는 경관 관련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결정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 심의(자문)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용역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완료 이전
 2.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 발주 이전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예천군 군계획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2. 「예천군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3.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제26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예천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예천군의회 의원

2. 예천군 및 경관계획 관련 기관의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자문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결·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2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②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경관계획수립제안서

제안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무실)

연락처

제안개요

구역명칭

위 치

면 적

용도지역

인구/세대수

제안내용

「예천군 경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제안자 현황 파악이며, “경관계획 수립 제안” 관련업무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집·이용 항목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③ 보유기간 : “경관계획 수립 제안” 관련업무 완료 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의 접수·검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별지 제2호서식]

경관사업계획서				
신 청 자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사무실)		연 락 처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목 표			
	사 업 주 체			
	사 업 내 용 (범위, 추진일정 등)	별지 작성		
	사 업 추 진 방 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별지 작성		
	유지관리 방안	별지 작성		
	사 업 비 용 (사업비 산출근거 및 지원요청사항 포함)	별지 작성		
「예천군 경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현황 파악이며, “경관계획 수립 제안” 관련업무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집·이용 항목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③ 보유기간 : “경관계획 수립 제안” 관련업무 완료 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의 접수·검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계획 4. 유지관리 계획서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사업의 기대효과 등				

[별지 제3호서식]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 소(사무실)	()		
사업구분	구 분	☐ 신규 ☐ 변경		
	대 상 시 설			
	사 업 명			
	사 업 위 치			
신청내용				
「예천군 경관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예천군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현황 파악이며, “경관계획 수립 제안” 관련업무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집·이용 항목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③ 보유기간 : “경관계획 수립 제안” 관련업무 완료 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의 접수검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1. 경관 심의 도서 1부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제정이유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예천군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과 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경관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관관리의 목적과 기본방향 등에 대하여 규정 (제1조 ~ 제4조)

나. 경관계획의 수립 및 내용에 관한 사항 (제6조 ~ 제8조)

다. 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

○ 도시구조물·공공시설물, 건축물, 야간경관, 특정한 공간과 거리 특화,

주요하천변 및 수변경관, 군 경관기록화, 교육·홍보 등

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협의체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제12조 ~ 제13조)

마.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 (제14조)

○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거나, 협정체결 이행사업

바.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5조)

○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사.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제20조)

○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 기타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아. 경관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심의·자문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함
(제22조~제28조)

○ 심의대상 사회기반시설

-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보상비 제외) 공원 및 조경공사
-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한 경관 조명시설로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 심의대상 건축물

- 경관지구의 건축물 (건축신고대상, 지상4층 미만 제외)
-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축하는 건축물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자.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 (제29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93호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예천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안전도 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과 협의한 바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이미 접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 6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수수료 절대 미 반환 규정을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 관련 상위법령 미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수료 반환사유 예시규정 신설 (제24조제2항)

- 과오납시, 신청인의 변경 및 철회, 공무원의 착오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나. 상위법령 미근거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별표 6)

- 현행 :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80~500만원)
- 변경 : 해당 규정 삭제

예천군 생활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수집보상금 지급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12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예규 제20호

**예천군 생활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수집보상금 지급 지침
일부개정지침**

예천군 생활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수집보상금 지급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프라스틱류”를 “플라스틱류”로, “프라스틱함지박”을 “플라스틱함지박”으로 한다.

제3조 중 “예천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농폐비닐 : 한국환경공단의 농촌폐비닐 수거등급 판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제7조 중 “한국자원재생공사·사단법인한국폐자원재활용협의회예천지회”를 “한국환경공단·사단법인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로, “기타 군수”를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행한 수거전표의 수거량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현행 지침의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 조례명과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운영지침에 따라 폐비닐 수거등급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용어의 개정 (제2조 및 제7조)
- 나. 인용 조례명 변경 (제3조)
- 다. 폐비닐 수거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수집 보상금 지급기준 변경 (제6조)
- 라. 보상금 지급 방법 세부 사항 명시 (제8조)

